KOSHA GUIDE

C - 77 - 2013

- (5) 주탑 시공을 위한 슬립폼, 크레인, 승강기, 콘크리트 압송관 등은 작업 또는 조립·해체 시에 심하게 움직이거나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.
- (6) 슬립폼 조립 시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(가) 각 작업대 단부에는 근로자의 추락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난간대는 지름 2.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재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로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구조이어야 한다. 또한 안전난간 하부에는 낙하물을 방지하기 위한 발끝막이판(Toe Board)을 설치하여야 한다.







<그림 9> 주탑 슬립폼 단부 안전난간 및 탑주 사이 추락방지망

(나) 각 작업대 사이에는 계단, 사다리 등 안전한 승강통로를 설치하며, 사다 리를 설치할 경우 추락방지용 등받이를 설치하여야 한다.